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한-베트남 FTA HS기준연도 변환(HS2012→HS2017)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안내>

2022년 8월 1일자로 한-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HS기준연도가 HS2012에서 HS2017로 변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베트남 FTA의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17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관세청은 PSR의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라 인증받은 세번이 변경되는 업체의 신규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업체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22.10.31.까지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안내문과 함께 첨부된 세번(시트1)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어 인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므로, 해당 세번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은 업체에서는 관할세관장에게
 -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또는 인증만료일이 1년 이내로 인증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인증연장 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받은 세번(HS2012)과 HS2017기준의 세번이 다른 경우에는 인증사항 변경신고(HS·PSR)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시트2)
3. 인증받은 세번(HS2012)과 HS2017기준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는 '관세청FTA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자료실 → FTA 서식모음

→ 한-베트남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22.8.1.부터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는 HS2017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하오니,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에서는 HS2017에 따른 세번으로 원산지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기한 내에 자율점검 후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향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 한-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번 1부. 끝.